|  |  |  |
| --- | --- | --- |
| **시청제품 수입 관리방법**  신문출판총서, 해관총서령 제53호  <시청제품 수입 관리방법>이 2011년 3월 신문출판총서 제1차 업무회의와 세관총서에 의해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며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세관총서  2011년 4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 시청제품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인민군중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시청제품 관리조례>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 중의 시청제품이란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음반, CD, VCD 등을 말한다.  **제3조** 외국에서 수입한 시청제품 완제품과 출판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수입 시청제품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전 항에서 말하는 출판은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출판도 포함한다.  라디오TV 방송에 사용되는 시청제품은 라디오TV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전국 시청제품 수입에 대한 감독관리와 내용심사 등 업무는 신문출판총서에서 관장한다.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당 행정구역 내의 수입시청제품의 감독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각 급 세관은 본 직책범위 내에서 시청제품 수입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시청제품의 수입경영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취지로해야 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리한 사상, 도덕,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하기 내용을 담은 시청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1) 헌법이 규정한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2)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완정에 해가 되는 내용  (3)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국가안전 혹은 국가영예와 이익에 해가 되는 내용  (4) 민족원한, 민족차별시를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혹은 민족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혹은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혹은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공중도덕 혹은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에서 금지로 규정된 기타 내용  **제7조** 중국은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기업 설립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제2장 수입단위**  **제8조**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업무는 신문출판총서에서 비준한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단위에서 경영한다. 비준을 득하지 않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경영기업 설립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시청제품 수입경영기업 명칭, 정관  (2)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  (3) 확정된 업무범위  (4) 수입시청제품의 내용에 대한 초심을 진행할 능력  (5) 시청제품 수입업무에 적합한 자금능력  (6) 고정적인 경영장소  (7)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10조**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경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신문출판총서에 신청을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후 신문출판사에서 발급하는 시청제품수입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집조를 발급 받는다.  또한 시청제품 수입경영기업의 설립은 대외무역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도서관, 시청자료관, 과학기술연구기구, 학교 등 단위에서 연구, 수업 참고용  시청완제품을 수입해야 할 경우에는 신문출판총서에서 비준한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경영기업에 위탁하여 수입 심사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시청제품출판단위는 비준한 출판업무범위 내에서 수입시청제품 출판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3장 수입심사**  **제13조** 중국은 수입시청제품에 대해 허가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시청제품을 수입하기 전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내용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비준을 거쳐 허가문서를 득한 후 수입할 수 있다.  **제14조** 신문출판총서는 시청제품 내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시청제품의 내용을 심사하도록 한다.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수입시청제품의 내용심사에 관한 일상업무를 진행토록 한다.  **제15조** 시청제품완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시청제품 완제품수 입경영단위에서 신문출판총서에 아래와 같은 문서와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수입 녹음 및 비디오제품 심사보고표  (2) 수입협의 초안 혹은 주문서  (3) 프로그램 샘플, 중국어 및 외국어 가사  (4) 내용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16조** 출판을 위한 시청제품의 수입은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에 아래와 같은 문서와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수입 녹음 및 비디오제품 심사보고표  (2) 판권무역협의 중국어 및 외국어 문안 초안, 원시 판권증명서, 판권 수권서와 국가판권국의 등록문서  (3) 프로그램 샘플  (4) 중국어 및 외국어 곡명, 가사 혹은 대화내용  (5) 내용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17조** 전람, 전시를 위한 시청제품 수입은 전람, 전시활동 주최단위에서 신문출판총서에 시청제품목록과 샘플을 제출하여 내용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은 일시 수입화물로 관리한다.  **제18조** 수입단위는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한 내용심사 샘플의 고유의 명칭과 내용을 제멋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신문출판총서는 시청제품 수입신청을 접수한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에는 시청제품수입비준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시청제품 수입비준서의 내용은 수정해서는 아니 되며 수정할 경우에는 재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시청제품 수입비준서는 1회 통관사용에만 유효하며 복수 사용할 수 없다. 그 중 시청제품완제품의 비준서는 비준 당해 년도에 유효하며 출판에 사용되는 시청제품 비준서의 유효기한은 1년이다.  **제4장 수입관리**  **제20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수입시청제품을 출판, 복제, 도매, 소매, 임대, 영업성 방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연구, 교육참고용 혹은 전람, 전시용 수입시청제품을 경영성 복제, 도매, 소매, 임대 혹은 영업성 방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람, 전시용 수입시청제품을 중국경내에서 판매, 증정할 경우에는 판매, 증정 전에 반드시 본 방법의 완제품수입규정에 따라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 수입단위에서 외국 측과 체결한 시청제품수입협의서 혹은 계약서는 중국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3조** 수입시청제품 출판은 신문출판총서의 비준문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명칭을 제멋대로 변경하거나 프로그램 내용을 제멋대로 증가 혹은 추가해서는 아니 되며 비준한 중문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 프로그램은 시청제품 및 겉표지 포장에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수입시청 제품을 출판할 경우에는 시청제품 및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국가판권국의 등록문호와 신문출판총서의 수입비준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입시청 제품을 출판할 경우에는 관련 프로그램페이지에 상기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제24조** 시청제품 수입경영단위는 수입출판을 허가 받은 시청제품에 한해 판권 수권기한 내에는 그 시청제품의 완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제25조** 수입 시청제품 출판 시에 사용하는 언어문자는 반드시 국가에서 공포한 언어문자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6조** 수입단위는 신문출판총서에서 발급한 시청제품 수입비준서를 지참하고 세관에서 시청제품 수입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7조**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물로 시청제품을 출국, 입국할 경우에는 개인이 이용하며 합리적인 수량제한 요구 내에 해당되는 전제하에서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 기계설비에 따라 수입되고 수입 후 기계설비의 재수출에 따른 기록운행시스템, 설비설명, 전문용 소프트웨어 등 내용의 시청제품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품은 수입단위에서 제공한 계약서, 영수증 등 유효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검사 허가하여 통관시킨다.  **제5장 벌 칙**  **제29조**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시청제품 완제품수입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청제품관리조례> 제3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아래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 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불법행위 정지 명을 내리고 경고하며 불법 시청제품과 불법소득을 압수한다.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불법 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경영정지정돈을 명하거나 원 비준서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취소한다.  (1) 신문출판총서의 비준 없이 제멋대로 시청제품을 수입하여 출판할 경우  (2) 신문출판총서의 비준 없이 시청제품을 수입하여 도매, 소매, 임대 혹은 방영하는 경우  (3) 연구 및 교육참고 혹은 전람, 전시용 수입시청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방영하는 경우  **제31조** 수입시청제품을 출판함에 있어서 본 방법을 위반하고 규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영업정지정돈을 명하거나 혹은 원 비준서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32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아래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수입시청제품을 출판할 때 사용한 언어문자가 국가에서 반포한 언어문자 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수입시청제품을 출판할 때 본 방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 내용을 삭제 혹은 추가한 경우  비준을 득한 수입시청제품의 내용을 제멋대로 삭제 혹은 추가하여 본 방법 제6조 규정에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시청제품관리조례>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33조** 세관법 및 유관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34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에서 수입하는 시청제품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5조** 전자출판물 수입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6조** 본 방법은 신문출판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세관업무에 관한 부분은 세관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반포일자부터 시행한다. 2002년 6월 1일 문화부, 세관총서에서 반포한 <시청제품 수입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新闻出版总署、海关总署令第53号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已经2011年3月新闻出版总署第1次署务会议和海关总署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新闻出版总署  海关总署  二〇一一年四月六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对音像制品进口的管理，促进国际文化交流与合作，丰富人民群众的文化生活，根据《音像制品管理条例》及国家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音像制品，是指录有内容的录音带、录像带、唱片、激光唱盘、激光视盘等。  **第三条** 凡从外国进口音像制品成品和进口用于出版及其他用途的音像制品，适用本办法。  前款所称出版，包括利用信息网络出版。  音像制品用于广播电视播放的，适用广播电视法律、行政法规。  **第四条** 新闻出版总署负责全国音像制品进口的监督管理和内容审查等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新闻出版行政部门依照本办法负责本行政区域内的进口音像制品的监督管理工作。  各级海关在其职责范围内负责音像制品进口的监督管理工作。  **第五条** 音像制品进口经营活动应当遵守宪法和有关法律、法规，坚持为人民服务和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传播有益于经济发展和社会进步的思想、道德、科学技术和文化知识。  **第六条** 国家禁止进口有下列内容的音像制品：  （一）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三）泄漏国家秘密、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的；  （五）宣扬邪教、迷信的；  （六）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七）宣扬淫秽、赌博、暴力或者教唆犯罪的；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九）危害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十）有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禁止的其他内容的。  **第七条** 国家对设立音像制品成品进口单位实行许可制度。  **第二章 进口单位**  **第八条** 音像制品成品进口业务由新闻出版总署批准的音像制品成品进口单位经营;未经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从事音像制品成品进口业务。  **第九条** 设立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应当具备以下条件：  （一）有音像制品进口经营单位的名称、章程；  （二）有符合新闻出版总署认定条件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  （三）有确定的业务范围；  （四）具有进口音像制品内容初审能力；  （五）有与音像制品进口业务相适应的资金；  （六）有固定的经营场所；  （七）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的其他条件。  **第十条** 设立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应当向新闻出版总署提出申请，经审查批准，取得新闻出版总署核发的音像制品进口经营许可证件后，持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领取营业执照。  设立音像制品进口经营单位，还应当依照对外贸易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相应手续。  **第十一条** 图书馆、音像资料馆、科研机构、学校等单位进口供研究、教学参考的音像制品成品，应当委托新闻出版总署批准的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办理进口审批手续。  **第十二条** 音像出版单位可以在批准的出版业务范围内从事进口音像制品的出版业务。  **第三章 进口审查**  **第十三条** 国家对进口音像制品实行许可管理制度，应在进口前报新闻出版总署进行内容审查，审查批准取得许可文件后方可进口。  **第十四条** 新闻出版总署设立音像制品内容审查委员会，负责审查进口音像制品的内容。委员会下设办公室，负责进口音像制品内容审查的日常工作。  **第十五条** 进口音像制品成品，由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向新闻出版总署提出申请并报送以下文件和材料：  （一）进口录音或录像制品报审表；  （二）进口协议草案或订单；  （三）节目样片、中外文歌词；  （四）内容审查所需的其他材料。  **第十六条** 进口用于出版的音像制品，应当向新闻出版总署提出申请并报送以下文件和材料：  （一）进口录音或录像制品报审表；  （二）版权贸易协议中外文文本草案，原始版权证明书，版权授权书和国家版权局的登记文件；  （三）节目样片；  （四）中外文曲目、歌词或对白；  （五）内容审查所需的其他材料。  **第十七条** 进口用于展览、展示的音像制品，由展览、展示活动主办单位提出申请，并将音像制品目录和样片报新闻出版总署进行内容审查。海关按暂时进口货物管理。  **第十八条** 进口单位不得擅自更改报送新闻出版总署进行内容审查样片原有的名称和内容。  **第十九条** 新闻出版总署自受理进口音像制品申请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批准的，发给进口音像制品批准单;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进口音像制品批准单内容不得更改，如需修改，应重新办理。进口音像制品批准单一次报关使用有效，不得累计使用。其中，属于音像制品成品的，批准单当年有效;属于用于出版的音像制品的，批准单有效期限为1年。  **第四章 进口管理**  **第二十条** 未经审查批准进口的音像制品，任何单位和个人不得出版、复制、批发、零售、出租和营业性放映。  **第二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将供研究、教学参考或者用于展览、展示的进口音像制品进行经营性复制、批发、零售、出租和营业性放映。  用于展览、展示的进口音像制品确需在境内销售、赠送的，在销售、赠送前，必须依照本办法按成品进口重新办理批准手续。  **第二十二条** 进口单位与外方签订的音像制品进口协议或者合同应当符合中国法律、法规的规定。  **第二十三条** 出版进口音像制品，应当符合新闻出版总署批准文件要求，不得擅自变更节目名称和增删节目内容，要使用经批准的中文节目名称;外语节目应当在音像制品及封面包装上标明中外文名称;出版进口音像制品必须在音像制品及其包装的明显位置标明国家版权局的登记文号和新闻出版总署进口批准文号;利用信息网络出版进口音像制品必须在相关节目页面标明以上信息。  **第二十四条** 在经批准进口出版的音像制品版权授权期限内，音像制品进口经营单位不得进口该音像制品成品。  **第二十五条** 出版进口音像制品使用的语言文字应当符合国家公布的语言文字规范。  **第二十六条** 进口单位持新闻出版总署进口音像制品批准单向海关办理音像制品的进口报关手续。  **第二十七条** 个人携带和邮寄音像制品进出境，应以自用、合理数量为限，并按照海关有关规定办理。  **第二十八条** 随机器设备同时进口以及进口后随机器设备复出口的记录操作系统、设备说明、专用软件等内容的音像制品，不适用本办法，海关验核进口单位提供的合同、发票等有效单证验放。  **第五章 罚 则**  **第二十九条** 未经批准，擅自从事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活动的，依照《音像制品管理条例》第三十九条的有关规定给予处罚。  **第三十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新闻出版行政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音像制品和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并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一）出版未经新闻出版总署批准擅自进口的音像制品；  （二）批发、零售、出租或者放映未经新闻出版总署批准进口的音像制品的；  （三）批发、零售、出租、放映供研究、教学参考或者用于展览、展示的进口音像制品的。  **第三十一条** 违反本办法，出版进口音像制品未标明本办法规定内容的，由省级以上新闻出版行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并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第三十二条** 违反本办法，有下列行为之一的，由省级以上新闻出版行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可并处3万元以下的罚款：  （一）出版进口音像制品使用语言文字不符合国家公布的语言文字规范的；  （二）出版进口音像制品，违反本办法擅自变更节目名称、增删节目内容的。  擅自增删经审查批准进口的音像制品内容导致其含有本办法第六条规定的禁止内容的，按照《音像制品管理条例》有关条款进行处罚。  **第三十三条** 违反海关法及有关管理规定的，由海关依法处理。  **第六章 附 则**  **第三十四条** 从中国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进口音像制品，参照本办法执行。  **第三十五条** 电子出版物的进口参照本办法执行。  **第三十六条** 本办法由新闻出版总署负责解释。涉及海关业务的，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三十七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2002年6月1日文化部、海关总署发布的《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同时废止。 |